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

제정 2016.08.18.

개정 2020.03.10.

개정 2024.03.28.

개정 2025.03.2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범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 3 조 (공시)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로 제정·변경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나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 의 구성 현황

제 5 조 (이사회 의 구성)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 따른 이사회 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⑤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 4 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 7 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지배구조법 또는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7 호에 정하는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와 여신거래 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 특정 거래기업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②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하되,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포함한다)는 지배구조법 제 30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 1 항 제 7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 8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서 제 1 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회사에서 6 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8 조 제 3 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 9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사항을 결의한다.

③ 이사회는 종합적인 경영분석,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의 결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 내역,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④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제 30 조의 4 에 따른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 10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3.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 11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및 위원회 등 회의의 참석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3.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4. 필요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입수하여 조사, 연구 및 활용
5.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별로 합리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사 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문,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③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요한 기밀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는 제 4 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⑥ 사외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 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 13 조 (사외이사의 대한 정보제공)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재무, 그 밖의 업무 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2.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회사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할 것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3 일 전까지 제공할 것. 다만,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14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의 추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 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 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03. 28.>

② 제 1 항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③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35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는 연속하여 5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제 2 항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이사의 퇴임)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3. 상법 및 관련법령 또는 정관 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의 현저한 부적정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특별 결의된 경우

제 5 절 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 17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2,5,8,11 월) 세 번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은 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8 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 의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절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역할 및 책임, 주주 및 고객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 한다.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③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1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이하 본장에서 “위원회”라 함을 각 조 제목의 위원회를 말한다)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 후보를 물색, 심사,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 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앞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지배구조법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해당 후보가 관련 법령 상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본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감사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제 19 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 수가 제 1 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 4 조)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총괄임원 및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⑥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당 1 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⑦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3 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리스크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일반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분기 1 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보수위원회) ① 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 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위험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보상제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심의 및 연차보상평가 실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5 조 (내부통제위원회) ① 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 30 조 2 제 1 항에 따른 임원 및 대표이사가 각각 같은 법 제 30 조의 2 와 제 30 조의 4 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26 조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6 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임원으로서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28 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 26 조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1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 29 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원은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회사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⑦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 선임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담당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③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기간은 별도의 정함에 의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 (임원의 퇴임) ① 이사의 퇴임에 관하여는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 1. 임기(고용계약기간)의 만료
-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 3. 인사 관계규정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 4.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며,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의결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이외의 임원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 (임원에 대한 교육) ①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내부 및 외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임원 중 선발된 자에 한하여 외부 위탁 파견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매년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내 대하여 사내 또는 사외 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 33 조 (임원의 성과평가) ①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은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재무, 고객, 프로세스 및 혁신·성장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정한다.

② 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연임 시 활용한다.

제 34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연봉과 상여금, 직책수당, 퇴직금 등으로 구분한다. 단,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한 별도의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하여 보수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 연봉은 연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단, 계약에 의한 집행임원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상여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성과보상규정에 따른다.

④ 직책수당은 임원의 직책 및 직위 구분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또한 회사의 명에 의하여 해당 직책의 직무를 대행하거나 해당 직책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 35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 36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 5조에 명시된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비전과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윤리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경영혁신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제 37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추천 받을 수 있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각종 평가와 검증 작업을 실시한다.

③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 에 대해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8 조 (경영승계 절차 개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시 될 수 있다.

1. 중도사임
2.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제재나 기타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4.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명예실추를 초래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경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아, 제 34 조(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9 조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 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③ 최고경영자 승계관련 담당 업무는 인사팀에서 지원하며 운영상황은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매년 1 회 보고하도록 한다.

제 40 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 41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퇴임 관련 사항은
제 14 조(이사 선임) 및 제 16 조(이사의 퇴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최고경영자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임면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 사유 등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8 월 18 일 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 자격요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선임(연임 포함)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7 조 제 2 항, 제 9 조 제 3 항, 제 4 항, 및 제 25 조 제 4 항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이후부터 적용한다.